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695호 2019. 5. 1.(수)



선	기관의 장
결	

고 시

제2019-45호 도로명주소 고시 2

공 고

제2019-556호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4
 제2019-562호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제2019-569호 거창군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안내 24
 제2019-586호 클린지킴이 음성 CCTV(스마트경고판)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29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1.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3길 80 등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48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3길 80	2009-12-28	2019-05-01	동례길의 시점으로부터 세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산187-1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길 435-81	2009-04-01	2019-05-01	모곡천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어 붙여진 행정구역명 동변을 반영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108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길 472-70	2009-04-01	2019-05-01	모곡천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어 붙여진 행정구역명 동변을 반영한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614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산포2길 40-42	2009-04-01	2019-05-01	마을뒤에는 산이 앞에는 물이 흘러 내린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23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상수월길 99	2009-04-01	2019-05-01	상수월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979-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2길 473	2009-04-01	2019-05-01	가야산에서 마을 뒤까지 남서로 뻗은 산줄기가 용 같아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146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창마1길 101	2009-04-01	2019-05-01	고려 때부터 가소현 창고가 있어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8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704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한기2길 366	2009-04-01	2019-05-01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국사봉 남쪽 기슭에 자리한 한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1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단지5길 11	2017-07-19	2019-05-01	승강기전문농공단지 특성 반영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2. 개정이유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액을 상향 조정하여 군민들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명확히 설정(안 제1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인명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안 제9조 제4항)
 -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4. 25. ~ 2019. 5. 16.(21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환경과

- 전화번호 : 055)940-3761, FAX : 055)940-3759

거창군 조례 제556 호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4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농업인 등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인명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인명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말한다. ② 피해지원금은 직접 피해농업인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해농업인 등이 사망하였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③ 피해농업인 등이나 그 가족은 피해지원금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야생동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시 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인명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인명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말한다. ② 피해지원금은 직접 피해농업인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해농업인 등이 사망하였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③ 피해농업인 등이나 그 가족은 피해지원금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예방시설의 지원)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의 세부기준 및 방법·절차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피해예방시설의 지원)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3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7. 10] [대통령령 제28578호, 2018. 1. 9, 일부개정]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시행 2019.3.21] [환경부고시 제2019-59 2019. 3. 21. 일부개정]

제15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2조(조례제정) ①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규정을 자체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의 유와 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초지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 반영

- 사회적 가치실현 강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사항을 신설 (안 제30조 제7항, 제30조 제8항)
- 법령상 용어 변경 (안 제24조 제1항)

나. 법령폐지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 변경

-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 폐지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관련 근거 규정으로 개정(안 제15조의2 제1호)

다.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신설

- 「초지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관련 조항 신설
(안 제24조 제7항)

라.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사항 반영

- 공유재산심의회의 부위원장의 직위 변경
(안 제6조 제6항)

3.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 2019년 5월 20일까지

나. 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메일 등

다. 의견 제출시 기재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처 : 거창군청 재무과

- 주 소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참조 재무과장)
- 전화번호 : 055-940-3262
- 팩 스 : 055-940-3219
- E- mail : leepw007@korea.kr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생년월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중 부위원장“(재산관리 담당부서장)”을 “(재산관리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제24조제5항제1호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중 “실경작자에게”를 “농업인에게”으로 한다.

제2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30조제7항과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 ⑧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및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제3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30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를 “제1항부터 제9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p> <p>① ~ ⑤ (생략)</p> <p>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u>재산관리 담당 부서장</u>)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항신설2015.12.10.)</p> <p>⑦ ~ ⑪ (생략)</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 ----- (재산관리 담당국장) ----- -----</p> <p>⑦ ~ ⑪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생략)</p> <p>1. 「<u>외국인토지법 시행령</u>」 제2조 <u>별표1에 의한 국제기구</u></p> <p>2. (생략)</p>	<p>제15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현행과 같음)</p> <p>1. 「<u>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p> <p>2. (현행과 같음)</p>
<p>제24조(대부료율)</p> <p>① ~ ⑤ (생략)</p> <p>⑤ (생략)</p> <p>1. 농경지를 <u>실경작자</u>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p> <p>2. ~ 6 (생략)</p>	<p>제24조(대부료율)</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1. 농경지를 <u>농업인</u>에게----- -----</p> <p>2. ~ 6 (현행과 같음)</p>

<p>⑥ I(생략)</p> <p><신설></p>	<p>⑥ I(현행과 같음)</p> <p>⑦ 「<u>초지법</u>」 제17조에 따라 <u>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u></p>
<p>제30조(대부료의 감면)</p> <p>① ~ ⑥ (생략)</p> <p><신설></p> <p><신설></p> <p>⑦ (생략)</p> <p>⑧ <u>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u></p>	<p>제30조(대부료의 감면)</p> <p>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u>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영 제13조 제3항제21호 및 제22호에 해당하는</u> <u>는</u> <u>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u></p> <p>⑧ <u>영 제29조제1항제20호 및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u></p> <p>⑨ (현행 제7항과 같음)</p> <p>⑩ <u>제1항부터 제9항에 따라 -----</u></p>

□ 초지법

- 제17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 ① 국유지·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③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이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비용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 ⑥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국유지·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그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 2019. 6. 5.] 제17조제7항/ 대통령령 제29324호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 7. 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7. 2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

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7., 2015. 7. 20.>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시행일 : 2019. 6. 5.] 제29조제1항제20호, 제29조제1항제25호/ 대통령령 제29324호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12. 4.>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2016. 7. 12.>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

부하는 경우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시행일 : 2019. 6. 5.] 제29조제1항제20호, 제29조제1항제25호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12., 2018. 12. 4.>

-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4. 제29조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 1.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 2. 제1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시행일 : 2019. 6. 5.] 제29조제1항제20호, 제29조제1항제25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2. 정부간 기구
3. 준정부간 기구
4. 비정부간 국제기구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일 : 2019. 1. 1.] 조례 제2457호

제2조(국장·담당관·과장·소장 직급 등) 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장·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직·인사 운영, 직원 복무·후생복지, 대외협력, 정보전산 등 행정에 관한

사항

2. 군 현안·역점 사항 추진, 기업지원, 승강기산업 육성, 투자유치 등 미래 전략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교육진흥, 평생학습,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운영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4. 민원행정, 지적민원, 새주소사업, 식품·공중위생, 지적재조사 등 민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부과, 경리·계약, 세입관리, **공유재산관리**, 개별 주택·공시지가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축제, 관광정책, 문화재보존, 박물관·수승대 등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
7.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보육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거창군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안내

우리 군은 공공건축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거창군 공공건축가제도” 를 시행하고자 거창군 공공건축가에 참여할 우수한 인재를 공개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 4. 29.

거창군수

1. 모집분야 및 인원

- 가. 모집분야 : 공공건축가
- 나. 모집인원 : 공공건축가 8명 내외

2. 공공건축가 주요업무 및 역할

-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SOC 거점시설(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
- 공공건축물 건립 방향과 설계, 정비계획 참여 등

3.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2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4. 응모자격 : '19. 4. 29. 기준 현재 거창군 관내 사업장·사무실 운영

구 분	자 격 요 건
기본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우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시행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국 내·외 공공건축물 현상공모 당선 실적이 있는 자 • 정비계획의 수립 및 단지설계, 도시재생사업 등에 총괄계획가(MP)로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디자인, 설계, 도시, 조경, 정비사업 분야에서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예비등록 포함)한 건축사 • 건축·도시 전문분야 국내·외 수상실적이 있는 자

5.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년 4월 29일 09:00부터 ~ 2019년 5월 13일 18:00까지(15일)

나. 접 수 처 : 거창군 도시건축과

- 응모원서 양식은 거창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방문제출 : 2019년 5월 13일 까지 18:00까지 제출 인정

- 우편제출 : 2019년 5월 13일 까지 18:00까지 도착 인정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 이 메 일 : 2019년 5월 13일 까지 발송된 메일 인정(주소 : rkddls9@korea.kr)

6. 제출서류 : 첨부 양식 참조

- 별도실적을 제출하실 경우 임의로 작성하시되 A4 용지 3매 이내로 제출

7. 선정방법 : 거창군 공공건축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

8. 기 타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거창군 공공 건축가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응 모 원 서

접수번호	※ 기재하지 않습니다.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거주지/ 사무실		연 락 처	사 무 실	
			휴 대 폰	
			E-mail	
현근무지				
학 력	부 터	까 지	학 교 명	전 공
주요경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당업무
상 훈				
자격사항	취득일자	종 별	취득일자	종 별
첨부서류 : 자기소개서 1매				
<p>본인은 상기와 같이 거창군 공공건축가 모집에 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 font-weight: bold;">거창군수 귀하</p>				

자 기 소 개 서

1. 응모자 인적사항

- 성명 :

2. 주요 실적 (학위 논문을 제외한 대표적인 연구논문, 저술, 현상공모 당선사례, 대표적인 작품 등 5건 이하)

-
-
-
-
-

3. 주요 활동사항

구 분	기 간	활 동 내 용	비고(직책 등)
학회, 단체 등 ○ ○			
기 타 ○ ○			

4. 학위 논문 주제

가. 석사 논문

- 제 목 :
- 주 제 :

나. 박사 논문

- 제 목 :
- 주 제 :

5. 참여 동기 등 자기소개서 등

2019. .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작성요령

1. 제출서류에는 신청인 본인이 서명(전자서명 포함) 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작성 시 신청인 부주의로 인한 잘못 또는 허위 기재나 표기는 응모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제출서류는 아래의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접수번호“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② “학력“ 은 학사·석사·박사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③ “현근무지“ 는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주요경력“ 은 공직 또는 사회(실무)경력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기소개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A4 3매 이내로 작성합니다.
 - ① 워드프로세서 또는 수기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 ②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그 동안의 근무·연구 활동 및 업적, 공공건축가 모집에 참여하게 된 동기, 중점적으로 추구하려는 분야에 대한 소신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③ 기타, 위 작성분량 및 작성형식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클린지킴이 음성 CCTV(스마트경고판)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클린지킴이 음성CCTV(스마트 경고판)』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일

거 창 군 수

1. 행정예고명 : 클린지킴이 음성CCTV(스마트 경고판) 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2. 시 행 청 : 경상남도 거창군
3. 행정예고기간 : 2019. 5. 2. ~ 2019. 5. 22.(21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9. 5. 2. ~ 2019. 5. 22.(21일간)
5. 행정예고(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주요내용
 -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분리배출 유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녹화
- 설치위치

순번	읍 면	설 치 장 소	비고
계		총11개소	
1	거창읍	거함대로4길 89-9	
2		거열로 165-1	
3		중앙로 131-5	
4	응양면	신촌리 294-3	
5	고제면	봉산리 2474	
6		봉산리 2479-26	
7	남상면	무촌리 642-7	
8	남하면	대야리 산82-1	
9		지산리 산88-3	
10	가조면	원천2길 31-9	
11		지산로 1407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청 환경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 거창군청 환경과

○ 팩스 : 055-940-3759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문 의 처 : 거창군청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055-940-3503)

주 민 의 견 제 출 서

행정예고명	클린지킴이 음성CCTV(스마트 경고판) 설치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민(법인) 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의견제출 내용			
<p>클린지킴이 음성CCTV(스마트 경고판)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 출 자 (서명 또는 인)</p>				
거 창 군 수 귀 하				